

전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6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5. 8.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5. 8. 11. 접수 제20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0. 30. 주식회사 F 및 D과 사이에, 리스이용자 주식회사 F, 연대보증인 D(보증채무 최고액 6억원), 리스물건 경호기계, 리스로 매월 8,937,017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F는 2016. 3.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금 채권은 173,468,633원에 달한다. 소외 회사는 2018. 5. 3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F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12.경 D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2020. 4. 7. ‘D은 원고에게 329,470,152원 및 그 중 173,468,633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2015. 8. 3. 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11.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5.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가처분결정이 등기되었고, 소외 회사 및 원고가 금융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때인 2018. 5. 30.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 2)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D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초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리스료 지급을 연체한 2016. 4.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리스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 상사채권과 같이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과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할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분할변제의 특약이 있는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등 참조), 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D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리스료를 제대로 불입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등기가 없었고, 매매대금도 시세대로 지급하는 등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전라북도 정읍시 일 1770㎡
2. 토지
전라북도 정읍시 일 3952㎡
3. 토지
전라북도 정읍시 전 1547㎡
4. 토지
전라북도 정읍시 대 473㎡
5. 토지
전라북도 정읍시 임야 1937㎡
6. 토지
전라북도 정읍시 대 274㎡

- 이 상 -

